

## 참고

#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개요

구분	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(이하 '피해자 구조지원비')																						
목적	○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피해지원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.지원체계 마련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○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「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인신매매방지법)」제14조에 따라 <b>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</b> - 단, 아동·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확인서 발급 없이 지원 가능																						
사업주체	○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(이하 '중앙권익보호기관') ○ 중앙권익보호기관과 업무 협약한 피해자 구조지원비 신청기관 (이하 '지원기관')																						
사업내용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연간 지원 한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취업지원</td> <td>150만원</td> <td>학원비, 재료비, 한국어 교육 등</td> </tr> <tr> <td>법률지원</td> <td>600만원 ※ 초과 시 심의</td> <td>기존 법률지원제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 - 수수료, 인지대, 송달료 등 소송비용</td> </tr> <tr> <td>의료비</td> <td>500만원 ※ 초과 시 심의</td> <td>의료급여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</td> </tr> <tr> <td>생계지원</td> <td>(1인기준) 3회×765천원=2,296천원 ※ 심의 후 6회 지원 가능</td> <td>피해자 및 직계비속 미성년자 가구원 수에 따라 당해연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금액 지원</td> </tr> <tr> <td>귀국지원</td> <td>한도 없음 ※ 귀국관련 실비 지원</td> <td>항공료, 여권, 비자 발급 등</td> </tr> <tr> <td>통역지원</td> <td>150만원</td> <td>의료지원, 법률지원 시 필요한 통·번역비, 통역인여비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연간 지원 한도	내용	취업지원	150만원	학원비, 재료비, 한국어 교육 등	법률지원	600만원 ※ 초과 시 심의	기존 법률지원제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 - 수수료, 인지대, 송달료 등 소송비용	의료비	500만원 ※ 초과 시 심의	의료급여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	생계지원	(1인기준) 3회×765천원=2,296천원 ※ 심의 후 6회 지원 가능	피해자 및 직계비속 미성년자 가구원 수에 따라 당해연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금액 지원	귀국지원	한도 없음 ※ 귀국관련 실비 지원	항공료, 여권, 비자 발급 등	통역지원	150만원	의료지원, 법률지원 시 필요한 통·번역비, 통역인여비 등
구분	연간 지원 한도	내용																					
취업지원	150만원	학원비, 재료비, 한국어 교육 등																					
법률지원	600만원 ※ 초과 시 심의	기존 법률지원제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 - 수수료, 인지대, 송달료 등 소송비용																					
의료비	500만원 ※ 초과 시 심의	의료급여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																					
생계지원	(1인기준) 3회×765천원=2,296천원 ※ 심의 후 6회 지원 가능	피해자 및 직계비속 미성년자 가구원 수에 따라 당해연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금액 지원																					
귀국지원	한도 없음 ※ 귀국관련 실비 지원	항공료, 여권, 비자 발급 등																					
통역지원	150만원	의료지원, 법률지원 시 필요한 통·번역비, 통역인여비 등																					
지원기간	○ 지원항목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지원 가능하며, <b>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 이후부터</b> 지원 가능 (피해자확인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지원은 구조지원비로 지출 불가)																						
유의사항	<p>○ 타 지원제도로 취학·취업·법률·의료·생계·귀국지원을 받는 경우,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 <b>구조지원비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.</b> <b>단, '질병군'이 다른 경우 의료지원 가능, 법률지원은 심급이 다를 경우 지원 가능</b></p> <p>○ 지원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(병원 등)에 지급하되 생계지원에 한하여 피해자 구조지원비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체 가능 (인신매매방지법 제30조에 의거 불가피하게 피해자 지원시설*에 입소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생계비 지원 가능)</p> <p>* 피해자 지원시설 :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과 같이 숙식이 제공되는 시설</p> <p>○ <b>의료비 지급은 중앙권익보호기관의 장(인신매매방지법 제28조)이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</b></p>																						

※ 자세한 내용 문의 (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이현정 사무관, 02-2100-6452 /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김정은 팀장 02-6363-8401)